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9
----------	------------

제안년월일 : 2024년 9월 1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축소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의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기존에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일수는 확대된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서 공제하여 두 제도 간의 사용 범위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그 밖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30조의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제29조제4항 → 제29조제5항).
- 안 제29조제6항 교육지도시간의 사용범위를 축소함(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 부칙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에 따라 적용례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확대된 육아시간에 지난 7월 2일 이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공제하도록 적용례를 정비함.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6항 본문 중 “12세”를 “10세”로, “6학년”을 “4학년”으로 한다.

안 제30조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 사용할 수 있으며--  
-----  
----- 사용할 수 있다.

⑥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2개월-----  
---- 학습 지도-----  
-----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12개월-----  
---- 학습 지도-----  
----- 사용할 ----. -  
-----  
-----  
-----  
-----  
-----  
-----  
-----  
-----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  
-----  
-----  
-----  
-----

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별표 6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

-----  
-----  
-----  
-----  
-----  
----- 제29조제5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

-----  
-----  
----- 교육지도시간을 -----

----- 이 조례 시행일-----

-----  
-----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

<삭 제>

<삭 제>

은 2024년 7월 2일 이후 경  
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세 이상 8세 이하”를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24개월”을 “12개월”로, “입학 준비”를 “학습 지도”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  
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4항 및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

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30조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란 다음에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

별표 5의 사망의 대상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별표 6 제5호나목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

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  <u>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                      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                      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p>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                      직공무원</u>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  <u>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                      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                      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 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r> <tr><td><u>1년 이상 3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u>3년 이상 4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16</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3년 미만</u>	15	<u>3년 이상 4년 미만</u>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u>1년 이상 3년 미만</u>	15																														
<u>3년 이상 4년 미만</u>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9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삭제>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⑧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할 수 있다.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12개월-----

----- 학습 지도----- 사용할

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 사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⑧ ----- 공무원은 -----

----- 사용할

야 한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⑩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 ⑬ (생략)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4. (생략)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할 수 있다.

⑨ -----  
-----  
-----  
----- 사용할 -----.

1. 2. (현행과 같음)

⑩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사용  
할 -----.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  
-----  
사용할 -----.

⑮ -----  
-----  
-----  
사용할 -----.

1. ~ 4. (현행과 같음)

⑯ -----  
-----  
-----  
-----

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  
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  
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⑰ (생략)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  
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  
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  
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  
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  
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

----- . 다만, 장애인인 자녀  
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  
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  
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  
다.

⑰ (현행과 같음)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  
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  
-----  
-----  
-----  
-----  
-----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  
가는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4  
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  
제4항, 제27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  
-----  
-----  
----- 제29조제5항 -----  
-----  
-----.